

# V

##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

### 1

### 사업 개요

#### 가. 목적

-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쉼터 퇴소 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

#### 나. 법적근거

-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,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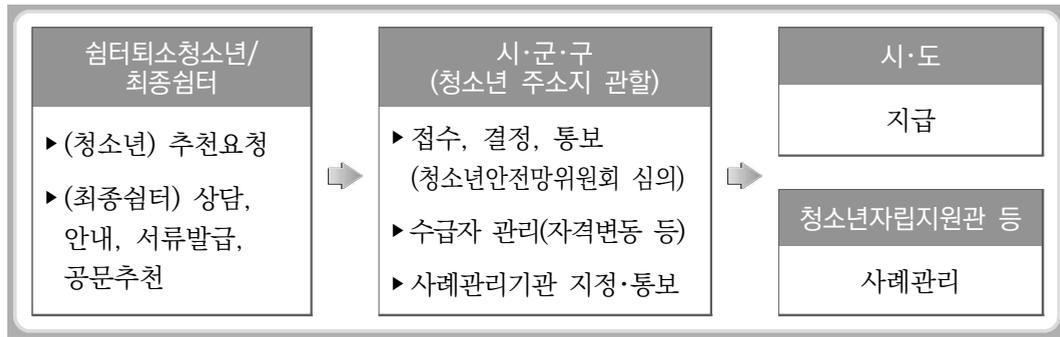
#### 다. 대상자

-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  -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('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)
  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 받았을 것)

#### 라. 지급 내용, 재원

-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(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)
- 국비 및 지방비 매칭(50:50)

마. 업무 흐름



단 계	담당기관 및 처리내용
신청	(담당기관) 전국 지방자치단체(광역 및 기초) * 관내 시설(센터, 자립지원관, 상담복지센터)에 제도 안내 - (컴퓨터퇴소청소년) 본인 신청(제출서류 : 신청서, 컴퓨터입소기간확인서, 자립계획서 등) - (최종센터)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관청에 공문 추천 * ▶청소년 대상 안내, ▶신청서 작성 지원(신청 지도, 컴퓨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,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), ▶청소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추천서 공문 제출
접수 ↓ 결정 ↓ 통지	(담당기관)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- (접수) 자치단체 담당자는 접수서류 확인 - (결정) 자격 검증(필요시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) 후 결정(적합/부적합) - (통보) 결정사항을 대상 청소년에게 통지, 적합결정사항은 수당 지급 관청에 통보 - (사례관리기관 지정) 광역지자체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·통보 *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은 청소년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정
지급	(담당기관) 관할 자치단체(광역 또는 기초(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)) -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(본인 명의 계좌 이체)
수급자 관리	(담당기관)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- (자격변동 관리)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※ (사례관리)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담당기관으로 지정, 월 1회 이상 사례관리 - 자립생활 지도, 기관 연계, 자립정보 제공 등 지원 -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관청에 유선연락하고, 해당 청소년에게는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

## 2 자립지원수당 신청

### 가. 지급대상

#### (1)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
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
  - 「국적법」에 따른 복수국적자, 「난민법」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
    - \* 단,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
 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

#### (2) 신청 자격 요건

- 청소년쉼터\*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
  - \*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의 청소년쉼터(단기 및 중장기쉼터에 한함)
  -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(‘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)
  - 퇴소일 기준,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(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)
-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경우
  - \* 지역 여건 또는 청소년의 특수상황을 인정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여가부와 사전 협의 필요

#### <기간 산정 기준>

- 기간 산정은 ‘역에 의한 계산(민법제160조)’ 방식을 따름
- 타 청소년쉼터(일시쉼터 제외)의 보호기간 합산 가능
  - 시설 입·퇴소 기간만 합산 가능(입·퇴소 없이 사례관리한 기간은 제외)
  - 시설 측과 협의 없이 또는 강제 퇴소한 경우 해당시설의 보호기간은 제외(무단 퇴소, 강제 퇴소, 형집행에 따른 퇴소 등)
  - 청소년쉼터를 퇴소\*한 후 7일 이내 재입소(동일 쉼터 또는 타 쉼터)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
    - \* 다만, 강제 퇴소한 경우 제외

#### <실제소득에서 제외>

-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, ‘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’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되며 소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

〈중복지원 불가〉

-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‘지원 결정’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 제외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아동복지법)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제외

〈신청자격이 없는 경우〉

- 사망·실종 신고
- 국적상실 :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
  - \* 단, 국적회복·취득으로 주민등록 생성·재등록 된 자는 신청 가능
- 난민인정 취소, 난민인정 결정 철회

나. 신청권자

- 본인 : 청소년쉼터 퇴소자
- 대리인 :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이내 인척, 배우자), 관계 공무원, 최종쉼터 소장
  - \* 최종쉼터 : 대상 청소년이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쉼터(단기 또는 중장기)

다. 신청방법, 절차 \* 청소년(신청) → 쉼터(추천) → 관할 시·군·구(검토, 결정)

- 대상 청소년은 「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」\* 작성·제출
  - \*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, 최종쉼터(단기·또는 중장기)가 추천하는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
  - \*\* 어떠한 경우라도 지자체의 ‘접수일’을 ‘신청일’로 간주함
- 최종쉼터는 ①신청 지도\*, ②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발급, ③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에 추천\*\*
  - \* 제도 안내, 신청서 작성 지도,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
    - 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지원
    - 청소년이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(관련 증빙서류 첨부 : 재학증명서(해외유학), 입영사실확인서(군입대), 병원입원확인서(질병) 등)
  - \*\* 추천서 제출서류 : 추천 공문 및 신청서류(신청서, 쉼터입소기간확인서, 자립계획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, 우편·팩스신청에 대한 증빙(해당사항 있을 시) 등)

라. 신청서 작성(청소년), 추천(쉼터), 접수(지자체)

(1) 신청서 작성(청소년) 및 대상자 추천(쉼터)

- \* 최종쉼터가 신청 과정을 지도·지원하고 추천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 (해당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쉼터가 추천하는 것을 권장)

○ 신청서류 작성

- 쉽터는 청소년에게 신청서식<서식 1호>을 제공하고, 작성을 지도
- 쉽터입소기간확인서 발급,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, 제반 서류 준비 안내 등

○ 추천

-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로 추천(공문형식으로 제출)

\* 시·군·구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지급기간 산정(☞ '지급기간' 내용 참조)

〈신청 및 추천 시 구비서류〉

(1) 필수 제출서류

- 쉽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<서식 1호>
- 자립계획서 <서식 2호>
- 쉽터입소기간 확인서 1부 <서식 4호>
-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(2) 추가 제출서류
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<서식 3호>, 대리인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,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
  - 관계증명 : (친족) 가족관계등록부, 제적등본, (시설종사자) 재직 증빙 서류 등
  - 대리신청 사유 : 청소년의 병원입원확인서, 입영확인서, 출입국 또는 유학증빙 등

- 주소지 변동 여부 확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안내
- 시설명은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청소년쉽터명을 작성
- 수급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(적금, 청약통장 등 제외)

-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

○ 수당 결정 이후의 사례관리 안내

- 청소년자립지원관 등(청소년의 주소지 인근) 담당기관이 지정된다는 사실 및 자립 생활 지도,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진행됨을 안내

(2) 접수(지자체)

- \*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(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 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)

○ 신청자격 등 확인

- 접수서류 및 신청자 인적사항 등 확인

\*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하되,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

○ 신청 접수 시 안내사항

- ① 처리기한 : 신청(추천) 접수일로부터 30일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)
- ② 통지방법 : 서면 통지(우편) 원칙,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우편(e-mail), 문자 메시지(SMS)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
- ③ 신고의무 : 수급자격과 관련된 정보(▲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·소멸, ▲거주지 변경, ▲지급계좌 변경, ▲외국 국적 취득, ▲군입대, ▲수용시설 입소 등)가 변동 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·군·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, 미신고 시 부적정하게 수급한 급여는 환수 처리
  - ※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사회보장급여법」) 제7조, 제20조

〈신고 방법〉

-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시·군·구에 신고
- 필수 제출서류
 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중 1종
  - 관련 증빙서류
  - 대리 신고할 경우 위임장(서식 3호) 및 대리인 신분증
    - ※ 사망에 따른 수급권 상실 신고 시 위임장은 불필요하며,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한 경우 수급권 상실 신고한 것으로 같음

〈다음의 경우, 보호자의 별도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〉

- 본인 사망 : 「가족관계등록법」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를 한 경우
- 국적 상실 : 「국적법」 제16조에 의한 국적 상실자의 처리
- 90일 이상 국외체류 : 출입국 시 국내 여권을 사용한 경우
  - ※ 복수 국적자가 외국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국외체류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안내

- ④ 정보제공 :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요원 등 자립업무 담당자에게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게 되며, 메시지(SMS), 전자우편(e-mail) 등을 통해 자립지원 제도 안내 등 정보 제공
- ⑤ 수당 환수 :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, 사망 시 지급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
- ⑥ 수급계좌 :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이 원칙
- ⑦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: 수집된 정보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,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(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34조)
  - ※ 지급 결정 후 수급권 상실 뿐 아니라 지급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정보 보유

### 3 지급 결정, 통지 및 지급

#### 가. 지급 결정

##### (1) 결정주체

-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·군·구 청소년 복지 업무 담당 부서(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 담당부서 등)

##### (2) 지급결정

- 접수된 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보장 여부를 결정

###### 〈자격 확인 절차〉

- 확인주체 :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·군·구
- 확인사항 : ① 쉼터 입소기간·자격, ② 본인 명의 계좌 여부, ③ 연락처 등
- 조치방법 : 제출서류 및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청인(쉼터퇴소청소년 및 최종쉼터)에게 필요 서류 제출 안내·징구

#### 나. 결정사항 통지 및 사례관리기관 지정

##### (1) 통지방법

- 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·군·구는 보장 결정 내용을 「쉼터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」(서식 5호)로 신청인(청소년 본인 및 추천 쉼터)에게 통지
  - ※ 신청인이 통지서 발송 전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, 발송 불필요
- 서면 통지(우편)를 원칙으로 하되,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 메시지(SMS), 전자우편(e-mail)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
- 내용 : 결정 내용, 급여·서비스 내용,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
  - ※ 광역시도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은 지급결정 사항을 광역시도에 즉시 공유

##### (2) 통지기한

-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)

### (3) 사례관리기관 지정·통보

- 청소년의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사례관리기관으로 지정·통보\*

\* 청소년 인적사항, 연락처, 수당지급 결정사항 등 사례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

※ '사례관리기관 지정 기준' 및 '사례관리에 대한 보고 체계' 등은 사전에 광역단위에서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

## 다. 지급

### (1) 지급 기간

- 신청일\*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  - \* 청소년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는 경우 및 센터가 청소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서류 접수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'접수일'을 '신청일'로 간주함
  - 청소년센터 퇴소일 포함 60일 이내(60일 되는 날이 토·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)에 자립지원수당을 신청하는 경우, 퇴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
- 자립지원수당 지급은 최대 36개월 한도 내 가능
  - ※ (예시) '21년 1월 1일 퇴소자의 경우
    - '21년 3월 1일(퇴소일 포함 60일)까지 신청하면 1월분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, '21년 3월 2일에 신청 시는 3월분부터 지급 가능
    - 신청이 지연된 경우라도 '23년 12월(퇴소일이 속한 월 포함 36개월째 되는 달)분까지만 지급 가능

### (2) 지급 방법

- 결정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
  - ※ 시·군·구 예산 배분이 곤란한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

### (3) 지급일

- 매월 20일에 지급(토·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〈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〉

- 변경이 10일 이전인 경우 : 변경 후 시·군·구(또는 시·도)에서 지급
- 변경이 11일 이후인 경우 : 변경 전 시·군·구(또는 시·도)에서 지급

라. 환수

(1) 환수 주체

-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지급 건을 집행한 시·군·구(또는 시·도)

(2) 환수 대상

- 수급권이 상실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
- 지급정지 기간 중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
- 행정 착오,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

(3) 환수 절차

- 환수 절차 : 환수대상 확인 및 환수 결정 → 환수고지(공문으로 본인에게 우편 발송) → 환수
- 환수 대상 확인 시 조치사항
  - 환수 대상이 확인된 경우 변동 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 관리 대장에 기록 후 환수 결정 처리
- 환수 여부 결정 기한
  - 본인 신고 또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
  -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

## 4 수급자 관리

### 가. 수급자 관리 개요

#### (1) 관리책임

- 수급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 
\* 시·도는 월 1회 이상 관할 시·군·구의 관리 현황을 점검

#### (2) 관리대상

-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
- 수급자 거주지 변동, 사망, 국적상실, 국외이주, 교정시설 입소 등

#### (3) 관리방법

- 수급자의 신고, 확인조사, 공적자료 연계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변동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
- 수급자의 거주지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하여 매월 수당 지급 전 <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>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·초본 조회  
- 공적자료를 우선 확인하되,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에게 소명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등 실시
-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별도 보관

### 나. 신고 사항

#### (1) 지급 정지 사유

- 교정시설 입소(금고 이상의 형)  
- 적용시점 : 교정 시설 입소일  
- 지급정지 : 입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 정지  
- 확인 및 조치 :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(배우자 등)에게 증빙서류 징구(수용증명서)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에게 통지

※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입소 교정시설에 수용확인 요청 또는 관할 검찰청·법원에서 발행하는 '법원판결문'을 발급 받아 '선고일 및 형의종류' 확인

○ 행방불명, 실종·가출 등

- 적용시점 : 경찰관서 등에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
- 지급정지 : 경찰관서 등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경찰관서 등 신고 해제일 또는 변경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 정지

※ 단, 신고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생사여부 확인 시 지급정지 제외

- 확인 및 조치 : 법원·경찰서 협조를 통해 반기별로 행방불명, 실종·가출 등을 확인하고, 관계 증빙서류\*를 접수한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

\* 법원 : 실종·부재 청구 접수증, 실종·부재 신고 취소 신고증

경찰서 : 신고 접수증, 가출인 수배부, 안전Dream(아동·여성·장애인 경찰지원센터) 등

○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

- 적용시점 :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
- 지급정지 : 국외체류기간이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,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지급 정지

- 확인 및 조치 :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(배우자 등)에게 증빙서류(여권, 비행기 티켓 등) 징구,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

※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정지 예외 사유 : 인턴, 해외유학,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(단,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)

○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

- 적용시점 : 주민등록 상 거주주소 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날
- 지급정지 :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,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된 달까지 지급 정지

- 확인 및 조치 :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정지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

(2) 수급권 상실 사유

○ 국적 상실, 국외 이주

- 적용시점 : 직접 신고일 또는 확인할 날
- 지급기준 : 주민등록주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

- 확인 및 조치 : '국적상실자', '이민출국자', '현지이주자'를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
- 난민 인정 취소, 난민 인정 결정 철회
  - 적용시점 : 난민 인정 취소일, 난민 인정 결정 철회일
  - 지급기준 : 난민 인정 취소·난민 인정 결정이 철회된 달까지 수당 지급
  - 확인 및 조치 : 법무부 '난민인정불처분'의 취소일 또는 철회일을 확인한 후 수급권 상실 결정 처리 및 쉼터퇴소자 주소지로 통지
- 사망
  - 적용시점 :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에 의한 사망신고일
  - 지급기준 :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 지급
  - 확인 및 조치 : '사망의심자'인 경우 실제 사망여부 확인(주민등록 자료, 가족관계 시스템 사망신고 여부 등 공적자료 확인)한 후 수급권 상실결정처리 및 쉼터 퇴소자 주소지로 통지

**〈사망으로 인한 상실 사유 발생한 경우〉**

- 국적상실·국외이주, 난민 인정 취소·결정 철회와 달리, 사망으로 지급계좌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못한 급여가 있는 경우 환수 조치

**(3) 기타**

- 거주지 변경 : 본인 신고 또는 확인으로 거주지 변동 인지
- 주민등록번호 정정 : 사실 확인 후 만18세 미만인 경우 수급권 상실 또는 청소년 안전망심의위원회 심의 조치
- 지급계좌 변경 : 즉시 조치(본인 명의 통장에 한함)

**다. 통지방법**

- 통지방법 : 수급권 상실·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권 상실·정지 내용을 명시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결정 등 통지서(서식 5호)를 작성 후 우편발송(원칙) 하되,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(SMS) 또는 전자우편(e-mail)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
- 통지내용 : 결정 내용, 보장 구분, 급여·서비스 내용,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

- 실종선고 취소, 국적 회복 등 수급권 상실 사유, 교정시설 퇴소 등 수급권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함을 안내

〈이의신청 안내〉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심터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

## 5 사례관리(자립지원)

### 가. 정의

- 쉼터퇴소청소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·지원하는 것을 의미

### 나. 관리 주체

- 사례관리 : 지역의 청소년자립지원관
  - \* 자립지원관이 없는 지역은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
  - 사례관리 기간 : 자립지원수당 해당 기간
- 지도·감독 :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

※ '사례관리기관 지정 기준' 및 '사례관리에 대한 보고 체계' 등은 사전에 광역단위에서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

### 다. 사례관리 내용

- 청소년의 자립활동을 지원
  - 주거마련 지원(공공주택 연계 등), 독립생활 지도, 진로 지도, 학업·취업 및 구직 연계, 경제교육 등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·연계
- 시설·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지원
  - 자립수준(자립준비도) 평가 및 영역별 상담 제공
  - 자립지도프로그램(ex)라이프코칭)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도 등
- 그 밖에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, 서비스 연계 및 상담

#### 〈대상 청소년의 수급자격 변동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〉

- 사례관리 기관은 청소년의 수급자격 관련 정보의 변동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, 변동 있을 시는 즉시 관할 관청(청소년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)에 유선연락
  - \* 청소년의 거주지 변경, 사망, 국적상실, 국외이주, 교정시설 입소 등
- 해당 청소년에게는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

## 가. 정의

- 수급자의 인적변동사항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기록 관리, 제출
  -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, 접수, 결정 및 지급 현황 관리
  - \* 별지 <서식 9호> 활용

## 나. 수급자 현황 관리 및 제출

- 관리 주체 :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- 관리 내용
  - 대상자 추천·접수 및 결정사항, 이관사항, 변경사항 등
  - 수당 지급 현황, 예산 관리 현황 등
- 관리방법
  - 현황 변동은 공적자료 또는 신고자료를 통해 확인, 기록, 관리
- 제출 방법
  -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10일까지 지난 월말 기준 관리현황(지급인원, 지급액)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공문 제출(월별 정기제출, 수시 요구에 대한 제출)
  - \* 별지 <서식 10호> 활용

- 〈서식 1호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
- 〈서식 2호〉 자립계획서
- 〈서식 3호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위임장
- 〈서식 4호〉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
- 〈서식 5호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결정 등 통지서
- 〈서식 6호〉 이의 신청서
- 〈서식 7호〉 계좌 변경 신청서
- 〈서식 8호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
- 〈서식 9호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관리 대장
- 〈서식 10호〉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현황

<서식 1호>

(앞쪽)

<b>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</b>						처리기간 별도안내
<b>1. 신청인</b>						
대상 청소년	성명	E-mail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			연락처	전화 : 휴대전화 :
	계좌번호	* 본인 명의 은행 계좌만 가능			(예금주: )	
대리인	성명	청소년과의 관계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	연락처	전화 : 휴대전화 :
통지방법 희망		[ ] 서면(우편) [ ] 전자우편 [ ] 문자 메시지 [ ] 기타( )				
<b>2. 최종쉼터</b> * 청소년복지지원법령에 따른 단기 또는 중장기쉼터만 해당						
청소년쉼터명*				사업자등록번호 (고유번호)		
시설장명				담당자명, 연락처		
쉼터주소		( )				
E-mail		쉼터유형		[ ] 남 [ ] 여		
				[ ] 단기쉼터 [ ] 중장기쉼터		
<b>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</b>						
<p>본인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(시·도, 시·군·구)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[ ]동의함, [ ]동의하지 않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주소지 확인 (최초 지급 결정 시 및 지급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)</li> <li>• 공동이용 행정정보 : 주민등록표 등·초본</li> </ul> <p>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요청 시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						
<p>본인(대리 신청인 포함)은 뒷면의 <b>유의사항</b>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(또는 청소년쉼터 종사자)으로부터 <b>안내를 받았습</b>니다.</p> <p>위 내용은 <b>사실과 다르지 않</b>으며, 향후 수급기간 중 <b>신고의무(수급자격의 상실, 정지, 변경 등)를 다하지 않</b>을 경우 수당 지급의 정지 또는 환수 등 조치에 <b>이의를 제기하지 않</b>을 것을 <b>확약</b>하며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 :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서명 또는 인)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</b></p>						

(뒤쪽)

안내사항			
처리기한	30일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)	관계 법률	청소년복지지원법
첨부서류 (해당자)	1. 자립 계획서 2.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3.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4. 본인 명의 통장 사본 5.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증명서, 대리신청 사유에 대한 증비서류		수수료 없음
유의사항			확인 (√ 체크)
1. (중복수급 불가)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.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(아동복지법) 수령 이력이 있더라도 중복수급으로 간주합니다.			[ ]
2.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에게 제공된 서비스, 상담, 사례관리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출입국·병무·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 통신망(행정정보공공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.			[ ]
3. 자립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정지사유(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, 교정시설 입소, 주민등록말소, 거주불명 등록, 행방불명·실종)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, 반드시 그 사실을 청소년의 주소지 시·구·구에 알려야 합니다.(유학, 취업 인턴으로 해외 체류하는 기간은 정지사유에서 제외되나,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신고 필요)			[ ]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당을 받은 자 또는 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.			[ ]
5.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자립지원요원 등 자립담당자(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(청소년 자립지원관,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)에게 신청인의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또한, 추후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수당 수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			[ ]
6. 자립지원수당 수급자의 연락처, 이메일 주소를 통해 자립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[ ]
7.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		[ ]
처리절차			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			
[신청자·추천쉼터]		[처리기관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)]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           신청·추천 (청소년이 가장 최근 퇴소한 청소년쉼터(단기·중장기))         </div>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           확인 (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 지시·군·구)         </div>	
		↓	
	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           보장 결정 (청소년 주민등록 상 주소지시·군·구)         </div>	
		↑	
		신청결과 통지	



〈서식 3호〉

###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 위임장

지급대상 인적사항	성명	생년월일
--------------	----	------

쉼터퇴소청소년 (위임자)	성명(보호자)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
	전화번호:	휴대전화:
	주소	

내용	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, 급여 수급 통장의 변경, 수급권의 변경·상실 등에 대한 신고, 이의신청의 위임
----	---

대리인 (수입자)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	전화번호:	휴대전화:	위임자와의 관계:
	주소		

위임자(본인)는 위와 같이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의 신청, 급여 수급통장의 변경, 수급권의 변경·상실 등에 대한 신고,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입자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(위임자):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업무담당자 확인사항	위임자와 수입자(대리인)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
---------------	---

〈서식 4호〉

발행번호 :

### 청소년쉼터 입소기간 확인서

쉼터퇴소청소년 성명		주민등록번호		
주소	* 퇴소 이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			
청소년 쉼터 입소기간	쉼터명	쉼터유형	입소일자	
	퇴소일자	퇴소사유	입소기간	
				개월 일
	입소기간 계			개월 일
① 최근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입소기간의 합계 : ○년 ○개월 ○일 ② 최근 퇴소일 기준 직전 1년간 연속입소 여부 :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불인정				
용도	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			
제출처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)			

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증명합니다.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시 설 명

(직인)

주 소 :

연락처 :

담당자 :

대표자 :

- \* 최종쉼터(단기, 중장기)가 청소년쉼터 행정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
- \* 입소기간은 단기 및 중장기쉼터 입소기간만을 인정
  - 시설측과 협의 없이 또는 강제퇴소한 경우 해당 쉼터의 입소기간 불인정
  - 퇴소\* 후 7일 이내 재입소(동일쉼터 또는 타 쉼터)한 경우 연속입소한 것으로 간주
  - \* 다만, 강제 퇴소한 경우 제외
- \* 기간계산 : 역에 의한 계산(민법 제160조)을 따르며, '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(인사혁신처 예규)'의 '경력기간의 계산' 방식을 준용



## [ ] 변경·정지·상실

[ ] 변경	일 자	년 월 일 부터	내 용	
	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지 변동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[ ] 정 지	일 자	년 월 일 부터	내 용	
	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정시설 입소(금고 이상의 형 선고) <input type="checkbox"/>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국회 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(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)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·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[ ] 상 실	일 자	년 월 일 부터	내 용	
	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망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적상실 [ ] 국외이주 <input type="checkbox"/>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

1.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, 상당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
2.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,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**60일 이내**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(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**서면 또는 온라인(www.simpan.go.kr)으로**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4.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, 주소지 변경 또는 지급정지 사유의 발생·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 또는 자립지원 사례관리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담당자 : 직급

성명

문의 전화번호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







〈서식 10호〉

**〈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현황(매월 10일 제출)〉**

(단위 : 명)

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'22년 총 지급인 원	'23년 예상 지급인 원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
서울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구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광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울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종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북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경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주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\*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 기준 자료를 시·도가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

(작성요령)

- ① '22년은 지급 기준으로, '23년은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기준으로 작성
- ② 월별 인원 작성시 지급 누적인원을 작성하여야 함  
(즉, 1월에 1명 신규지급, 2월에 2명 신규 지급되면 2월에는 3을 적시)
- ③ '23년은 현 입소청소년이 향후 자격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, 퇴소하여 해당지역에서 수당신청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예상 수요 제출  
(즉, '23년 1월에는 ('22년말 총 지원인원 + '23년 1월 예상인원)을 적시)